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 (배진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230

발의연월일: 2020. 11. 11.

발 의 자:배진교·강은미·류호정

민병덕 · 심상정 · 이소영

이수진비・이은주・장혜영

허종식 의원(10인)

제안이유

금융그룹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금융그룹 수준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금융그룹의 건전성 관리를 위한 자본적정성과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관리 등을 규정함으로써 금융그룹의 건전한 경 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기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금융자산 5조원 이 상인 복합금융그룹에 해당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5조).
- 나. 금융위원회는 금융업을 신규로 영위하려는 자, 합병 등을 하려는 자 및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려는 자 등이 금융위원회의 인가,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음으로써 금융그룹의 감독대상 요건에 해당하게

- 되는 경우 금융그룹으로서의 건전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도록 함(안 제6조).
- 다. 감독대상으로 지정된 금융그룹이 아닌 자가 그 상호나 명칭에 금 융그룹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7조).
- 라.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 내 대표회사를 선정하여 금융그룹 내부통 제, 위험관리, 건전성 관리 등 제반 업무를 이행하도록 함(안 제8조및 제9조).
- 마. 금융그룹은 금융그룹 수준에서 법령 준수, 건전한 경영 등을 위한 내부통제정책 등을 수립해야 하며, 금융그룹 내부통제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대표회사 이사회를 보좌하기 위하여 금융그룹 내부통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 바. 금융그룹은 금융그룹 수준에서 업무의 수행과정,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 등을 관리하기 위한 위험관리정책 등을 수립해야 하며, 금융그룹 위험관리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대표회사 이사회를 보좌하기 위하여 금융그룹 위험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 사.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이 금융그룹 수준에서 금융회사간 자본의 중복이용 가능성, 내부거래 또는 위험집중에 따른 손실가능성, 금융 그룹 소속 비금융회사에 대한 위험노출 등 위험의 전이 가능성 등 을 고려한 금융그룹 수준의 자본적정성을 관리하도록 하되, 금융그

- 룹 내부통제체계와 위험관리체계에 대한 평가결과는 위험의 감경요 인으로 보지 않도록 함(안 제15조).
- 아. 금융그룹은 소속 비금융회사와의 이해상충 및 재무·경영위험 등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 전이를 통제하기 위해 소속 비금융회사를 상대방으로 하는 금융거래상의 손실위험이 수반되는 거래 및 거래가 해소되지 않아 존재하는 소속 비금융회사로부터의 위험노출 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17조).
- 자. 금융그룹에 속하는 금융회사는 금융거래정보, 개인신용정보 및 증 권총액정보등을 해당 금융그룹 내 다른 금융회사에 금융그룹의 위 험관리 등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그 룹에 속하는 금융회사는 공동광고를 하거나 전산시스템, 사무공간, 영업점 등을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 차.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이 이 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대표회사는 금융그룹의 위험관리 등 업무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 카. 금융위원회는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금융그룹의 감독을 위하여 금융그룹감독 총괄부서와 업권별 감독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감독체계를 정비하고, 금융그룹의 대표회사로 하여금 금융그룹의 통합 자본적정성, 주요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공시하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 타.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의 위험 현황과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평

가하고, 금융그룹 수준의 경영 건전성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함(안 제 23조).

파.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또는 위험관리실태 평가의 결과에 따라 해당 금융그룹에 대하여 경영개선계획 제출, 금융그룹 명칭사용금지 등 위험관리에 관한 개선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그룹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그룹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기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금융회사"란 금융업을 영위하거나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외국 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2. "금융그룹"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호에 따른 기업집단(이하 "기업집단"이라 한다) 내에 금융업을 영위하는 둘 이상의 금융회사가 소속되어 있는 경우 그 기업집단 내금융회사들로 구성된 집단을 말한다.
- 3. "복합금융그룹"이란 다음 각 목 중 둘 이상의 업을 영위하는 금 융회사들로 구성된 금융그룹을 말한다.
 - 가. 다음 각 1)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여수신업"이라 한다)

-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업무
- 3)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업무
-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
- 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의 업무에 한정한다)
- 6) 그 밖에 여신 또는 수신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 (이하 "금융투자업"이라 한다)
-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이하 "보험업"이라 한다)
- 4. "최상위금융회사"란 금융회사의 출자관계, 자산·자본총액 및 소유·지배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금융그룹에 사실상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 5. "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 6. "위험집중"이란 금융그룹이 직면하고 있는 위험이 해당 금융그룹의 지급여력 또는 전반적인 재무상황을 위태롭게 할 만큼 특정 거래상대방 또는 산업 등에 편중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7. "내부거래"란 금융회사가 대주주[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이 호, 제5조, 제10조 및 제16조에서 같다]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대주주를 위하여 행하는 거래로서 다음 각 목에 따른 거래행위를 말한다.
 - 가.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나.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다.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 라.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 8. "금융관계법령"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계법령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관계법령을 말한다.
-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금융업의 범위,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조(적용범위) ① 제3장 및 제4장의 규정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금융그룹에 속하는 금융회사들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에 속하는 금융회사의 업무, 규모 등을 감안하여 이 법을 적용할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선정된 대표회사의 신청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에 관하여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금융그룹의 위험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금융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감독대상의 지정 등

- 제5조(감독대상의 지정)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그룹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대상으로 지정한다.
 - 1. 복합금융그룹에 해당할 것
 - 2. 금융그룹에 속하는 금융회사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 3. 금융그룹에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 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금융회사가 하나 이상 소속되어 있을 것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1.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으로 구성된 경우
 -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

- 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이 속하는 경우
- 3. 그 밖에 금융회사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등 해당 여부, 겸영 여부 및 금융그룹 내 여수신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각각의 자산·자기자본의 비중·규모 등을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감독을 할 실익이 적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이 감독대상으로 지정된 후 제1항제2호의 금액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해당 금융그룹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로부터 3년간은 해당 금액 기준을 100분의 80 수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금융그룹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대표회사의 신청에 따라 해당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감독대상 제외를 신청하는 경우 금융그룹의 대표회사는 감독대상 제외 사유 및 관련 자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⑥ 금융위원회는 감독대상을 새로 지정하거나 감독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해당 금융그룹의 대표회사(대표회사 선정 전에는 최상위금융회사, 최상위금융회사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에는 자산총액이 가장 큰 금융회사로 한다)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 ⑦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정 또는 제4항에 따른 감독대상 제외를 위하여 금융회사 또는 그 대주주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일반 현황, 금융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대주주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⑧ 감독대상으로 새로이 지정된 금융그룹의 경우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간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6조(인허가 등의 심사)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로 인하여 해당 금융회사가 속한 금융그룹이 제5조제1항에 따른 감독대상으로 지정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그룹이 제14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인가 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1. 금융업을 영위하거나 금융회사를 설립하려는 자가 금융관계법령 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인가, 허가 또는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 2. 합병, 분할합병 등을 하려는 자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금융위원 회에 인가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 3. 금융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양수하고자 하는 자가 금융관계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7조(유사명칭사용 금지)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금융그룹에 속하는 금융회사, 제5조제2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금융그룹에 속하는 금융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나 명칭에 금융그룹임을 표시하는 문자(금융그룹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한글 또는 외국어 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포함하며, 이하 "금융그룹 명칭"이라 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5조제4항에 따라 감독대상에서 제외된 금융그룹에 속하는 금융회사가 금융그룹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지정 제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장 금융그룹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제1절 대표회사의 선정

제8조(대표회사 등의 선정) ① 금융위원회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때에 해당 금융그룹의 최상위금융회사를 대표회사로 정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그룹과의 협의를 거쳐 대표회사를 달리 정하거나 기존에 정한 대표회사를 변경할 수 있다.

- 1. 금융그룹 내 최상위금융회사가 불분명한 경우
- 2. 최상위금융회사가 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금융그룹이 최상위금융회사가 아닌 다른 금융회사를 대표회사로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금융위원회에 이를 요청하는 경우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대표회사의 선정 또는 제2항에 따른 대표회사의 변경을 위해 해당 금융그룹에 속하는 금융회사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산·자본의 규모, 주주의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대표회사의 업무 등) ① 대표회사는 그 대표회사가 속하는 금융 그룹(제5조제6항에 따른 지정 통지를 받은 금융그룹을 말한다. 이하 이 장 및 제4장에서 같다)을 대표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다.
 - 1.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금융그룹 내부통제정책, 금융그룹 내부 통제기준 및 금융그룹 내부통제기구에 관한 사항
 - 2.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금융그룹 위험관리정책, 금융그룹 위험 관리기준 및 금융그룹 위험관리기구에 관한 사항
 - 3.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그룹의 건전성 관리

- 4. 제22조에 따른 보고·공시에 관한 업무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 ② 금융그룹 내 대표회사가 아닌 다른 금융회사(이하 "소속 금융회사"라 한다)는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대표회사의 자료제출 및 조치·계획의 이행 요청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2절 금융그룹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체계

- 제10조(금융그룹 내부통제정책 등) ① 금융그룹은 금융그룹의 건전한 내부통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금융그룹 수준의 내부통제정책(이하 "금융그룹 내부통제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평가·점검하여야 한다.
 - 1. 금융그룹 내부통제정책의 운영에 관한 사항
 - 2. 금융그룹의 금융관계법령 위반 방지 등을 위해 업무 수행 시 준수하여야 할 원칙 등에 관한 사항
 - 3. 금융그룹의 내부통제 취약부분에 대한 점검 및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 4. 금융그룹의 고객, 금융그룹에 속하는 금융회사, 금융회사와 동일 기업집단 내 금융회사가 아닌 회사(금융회사의 대주주이면서 회사 가 아닌 자를 포함하며, 이하 "소속 비금융회사"라 한다) 등 이해

관계자 사이의 이해상충 방지에 관한 사항

- 5. 금융그룹에 속하는 금융회사의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선임 시금융그룹 수준에서 고려하여야 할 원칙 등에 관한 사항
- 6. 기타 금융그룹 임직원의 윤리의식 및 준법의식 등 내부통제 수준 제고에 관한 사항
- ② 금융그룹은 금융그룹 수준에서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 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그룹에 속 하는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금융그룹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 다.
- ③ 제1항에 따른 금융그룹 내부통제정책 및 제2항에 따른 금융그룹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따른다.
- 제11조(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 ① 금융그룹 내부통제정책의 수립 및 금융그룹 내부통제기준의 제정·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그룹의 내부통제에 관한 주요 사항은 대표회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금융그룹은 제1항에 따른 대표회사 이사회의 내부통제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금융그룹 내부통제기구를 둘 수 있다.
 - ③ 제2항의 금융그룹 내부통제기구는 금융그룹에 속하는 금융회사

들이 참여하는 협의회(이하 "금융그룹 내부통제협의회"라 한다)로 구성한다. 다만, 소속 금융회사의 사업비중이 크지 않은 경우 등 금 융그룹 내부통제협의회의 설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대표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금융그룹 내부통제기구로 지정할 수 있 다.

- 1. 대표회사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른 내부통제위원회
- 2. 대표회사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금융그룹 내부통제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2조(금융그룹 위험관리정책 등) ① 금융그룹은 금융그룹의 위험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금융그룹 수준의 위험관리정책(이하 "금융그룹 위험관리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평가·점검하여야 한다.
 - 1. 금융그룹 위험관리정책의 운영에 관한 사항
 - 2. 금융그룹의 제반 위험에 대한 인식·측정·감시·통제에 관한 사항
 - 3. 금융회사, 사업영역, 거래권역 등 분야별 위험부담한도의 설정 및 자본의 배분에 관한 사항
 - 4. 금융그룹의 고객, 금융그룹에 속하는 금융회사, 소속 비금융회사 등 이해관계자 사이의 이해상충으로 인한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 5. 기타 금융그룹의 주요 위험 변동상황에 대한 종합적 인식 및 감시에 관한 사항
- ② 금융그룹은 금융그룹 수준에서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밖에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평가·감시·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이하 "금융그룹 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금융그룹 위험관리정책 및 제2항에 따른 금융그룹 위험관리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따른다.
- 제13조(금융그룹 위험관리체계) ① 금융그룹 위험관리정책의 수립 및 금융그룹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그룹의 위험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은 대표회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금융그룹은 제1항에 따른 대표회사 이사회의 위험관리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금융그룹 위험관리기구를 둘 수 있다.
 - ③ 제2항의 금융그룹 위험관리기구는 금융그룹에 속하는 금융회사들이 참여하는 협의회(이하 "금융그룹 위험관리협의회"라 한다)로구성한다. 다만, 소속 금융회사의 사업비중이 크지 않은 경우 등 금융그룹 위험관리협의회의 설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대표회사는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금융그룹 위험관리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 1. 대표회사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 3호에 따른 위험관리위원회
- 2. 대표회사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책임자
- ④ 금융그룹의 위험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위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절 금융그룹의 건전성 관리

- 제14조(건전경영의 확보) 금융그룹은 금융그룹의 자기자본을 충실히 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며 관련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는 등 금융그룹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15조(자본적정성) ① 금융그룹은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자기자본을 유지하여야 하며, 금융그룹 수준의 자본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본적정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금융그룹 수준의 추가적인 위험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금융그룹에 속하는 금융회사 간 자본의 중복이용 가능성
 - 2. 내부거래 또는 위험집중에 따른 손실 가능성
 - 3. 금융그룹 소속 비금융회사에 대한 위험노출 등 위험의 전이 가능

성

- 4.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 또는 금융그룹 위험관리체계의 취약성
- 5. 소속 비금융회사와의 이해상충 및 소속 비금융회사의 재무·경영 위험 등이 금융그룹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
- 6. 그 밖에 통상적인 금융거래 외의 요인으로 인한 금융그룹의 위험 요인
- ③ 제1항의 자본적정성의 구체적인 점검·평가기준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추가적인 자본의 적립 기준 등은 금융위원회가 별도 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2항제4호의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 와 금융그룹 위험관리체계에 대한 평가결과는 금융그룹의 위험에 대한 감경요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을 정기적으로 평가·감독하여야 한다.
- 제16조(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① 금융그룹은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이 금융그룹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측정·감시·관리하여야 한다.
 - ② 금융그룹에 속하는 금융회사의 중요한 내부거래의 승인 등에 관하여는 「상법」 제398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준용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그룹에 속하는 금융회사의 대주주"로, "회사와 거래"는 "해당 금융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부거래"로 본다.

- 제17조(위험 전이) ① 금융그룹은 금융그룹의 내부통제체계 또는 위험 관리체계의 취약성 등에 따라 금융그룹에 속하는 금융회사의 위험 이 금융그룹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인식·평가·감시·통제 하여야 한다.
 - ② 금융그룹은 소속 비금융회사와의 이해상충 및 소속 비금융회사의 재무·경영위험 등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을 적절히 인식·평가·감시·통제하여야 한다.
 - ③ 금융그룹은 제2항의 위험을 관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1. 소속 비금융회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소속 비금융회사를 위하여 행하는 대출, 지급보증, 보험의 인수, 유가증권의 취득·매입·보유 등 금융거래상의 손실위험이 수반되는 금융회사의 직접적·간접적 거래 및 이러한 거래가 해소되지 않아 존재하는 소속 비금융회사 로부터의 위험노출
 - 2. 소속 비금융회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소속 비금융회사를 위하여 행하는 내부거래 비중
 - 3. 소속 비금융회사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장치의 적정성
 - 4. 소속 비금융회사의 대외 평판위험 등 기타 운영위험
- 제18조(고객정보의 제공·관리 및 공동광고 등) ① 금융그룹에 속하는 금융회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3조에도 불

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이하 "고객정보제공절차"라 한다)에 따라 해당 금융그룹에 속하는 다른 금융회사에 금융그룹의 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1.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 2. 고객정보의 암호화 등 처리방법
- 3. 고객정보의 분리 보관
- 4. 고객정보의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
- 5. 이용기간 경과 시 고객정보의 삭제
- 6. 그 밖에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금융그룹에 속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증권총액정보등"이라 한다)를 고객정보제공절차에 따라 해당 금융그룹에 속하는 다른 금융회사에 금융그룹의

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1. 예탁한 금전의 총액
- 2. 예탁한 증권의 총액
- 3.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그룹에 속하는 금융회사가 금융거래 정보·개인신용정보 및 증권총액정보등(이하 "고객정보"라 한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 조제10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 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제4항에 따라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 통지 주기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금융그룹에 속하는 금융회사는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그 임원 중에 1인 이상을 고객정보를 관리할 자(이하 "고객정보 관리인"이라 한다)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⑦ 고객정보관리인은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지침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

- 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⑧ 금융그룹에 속하는 금융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정보의 취급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당해 금융회사의 거래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고 영업점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⑨ 금융그룹에 속하는 금융회사들은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공동 광고를 하거나 전산시스템, 사무공간, 영업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공동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금융그룹의 감독

- 제19조(감독)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이 이 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한다.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회사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금융그룹의 내부통제, 위험관리 등업무 및 금융그룹의 재무상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20조(검사) ① 대표회사는 금융그룹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등 업무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검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

표회사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여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④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때에는 그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보고서에는 이법 기타 금융관련법령, 이 법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규정·명령 및 지시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⑤ 금융위원회는 검사의 방법·절차 기타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제21조(감독 협의체의 운영)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독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관계 부서로 구성된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협의체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관계 부서 간 의견교환 및 정보공유를 통해 이 법에 따른 감독으로 파악된 금융그룹의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상보완점에 대하여 협의한다.
 - ③ 제1항·제2항에 따른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기준 및 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2조(보고 및 공시) 금융그룹은 금융그룹의 예금자 및 투자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제23조(금융그룹 위험 관리실태 평가)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의 위험 현황 및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금융그룹 경영의 건전성을 감독하여야 한다.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1. 제11조에 따른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
 - 2. 제13조에 따른 금융그룹 위험관리체계의 적정성
 - 3. 제15조에 따른 금융그룹 자본적정성
 - 4. 제16조에 따른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의 적정성
 - 5. 제17조에 따른 위험관리의 적정성
 - 6. 그 밖에 금융그룹의 위험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4조(건전경영지도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15조제4항에 따른 금융그룹 자본적정성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금융그룹 위험의 관리실태등의 평가 결과가 제5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

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그룹의 재무상태가 제5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금융그룹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그룹의 대표회사에 대하여 금융그룹 수준의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할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받은 대표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1.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 및 위험관리체계의 개선
- 2. 자본의 확충 또는 위험자산의 축소
- 3. 내부거래 축소·해소 또는 위험집중의 분산
- 4. 위험의 전이 가능성이 있는 소속 비금융회사와의 출자·자금 기타 거래관계의 중단 또는 해소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금융그룹의 경영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이 제1항·제2항에 따른 조치 또는 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금융그룹의 위 험관리가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 금융시장의 안정을 해칠 것이 명백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금융그룹에 속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금융그룹 명칭의 사용중지

- 2.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또는 수정·보완
- 3.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이행
- 4. 그 밖에 제1항·제2항에 따른 금융그룹의 경영개선계획 제출에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내용이 부실한 금융회사에 대하여 금융그룹의 경영건전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
- ④ 제3항제4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금융그룹에 속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 1. 「은행법」 제34조제4항(해당 금융회사가 같은 법에 따른 은행인 경우에 한정한다)
- 2. 「보험업법」 제123조제2항(해당 금융회사가 같은 법에 따른 보 험회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조제4항(해당 금융 회사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 4.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4제2항(해당 금융회사가 같은 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인 경우에 한정한다)
- 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3조의3제2항(해당 금융회사가 같은 법 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 6.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해당 금융회사가 같은 법에 따른 금융기관인 경우에 한정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의 절차, 기준 및 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금융그룹이 단기간에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제1항 및 제3항의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 ⑦ 금융그룹에 속하는 금융회사의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금융그룹 또는 소속된 금융회사에 대한 공개되지 아니한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에 관한 정보(이하 "비공개정보"라 한다)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해당 금융회사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른 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⑧ 금융그룹에 속하는 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부터 비공개정보를 제공받은 해당 금융회사의 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해당 금융회사의 설립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른 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을 말한다)은 이를 해당 금융회사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처분 및 제재절차

- 제25조(행정처분 등)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 실에 한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1. 금융회사에 대한 위법행위의 시정명령·중지명령
 - 2. 금융회사에 대한 경고 또는 주의
 - 3.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해임요구·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요구· 문책경고·주의적 경고 또는 주의
 - 4. 직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면직·6 개월 이내의 정직·감봉·견책 또는 주의 요구
 - 5.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거나 해당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함께 하거나, 해당 조치 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 임직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조치를 감경 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항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금융회사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 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금융회사의 장은 이를 퇴임·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조치 중 임원의 해임요구 또는 직원의 면 직요구의 조치를 할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조치(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조치를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① 금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조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의조치 요구에 따라 그 임직원을 조치한 경우 및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⑧ 금융회사 또는 그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회사에 자기에 대한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조치여부 및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 ⑨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회사는 제8항에 따른 조회를 요청받은 경

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그 조회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6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 제27조(벌칙) 제24조제7항 또는 제8항을 위반하여 비공개정보를 해당 금융회사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 또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

-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5조제7항에 따른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 2.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그룹 명칭을 사용한 자
- 3. 제18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위반 한 자
- 4.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금융그룹의 내부통제, 위험관리 등 업무 및 금융그룹의 재무상태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 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 5. 제2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6. 제20조제2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7. 제22조를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공시한 자
- 8.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 9.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중지명령 및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사명칭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7조제1항에 따라 금융그룹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자가 그 상호나 명칭에 금융그룹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7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제25조제1항 관련)

- 1. 제5조제7항에 따른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금융그룹 내부통제정 책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금융그룹 내부통제기 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금융그룹 위험관리정 책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 5.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금융그룹 위험관리기 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 6. 제18조제1항·제2항·제4항·제6항 및 제8항을 위반한 경우
- 7. 제22조를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
- 8. 제24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 우
- 9. 제24조제7항 또는 제8항을 위반하여 비공개정보를 해당 금융회사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 또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

10. 그 밖에 거래자의 보호 또는 금융그룹의 건전한 운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